

2021년 『서비스 선도기업 육성사업』 신청 안내

□ **지원목적** : 국내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 확대, 글로벌 경쟁력 강화

□ **신청방법** : 수출바우처 홈페이지(www.exportvoucher.com) 온라인 신청
* 홈페이지 URL : www.exportvoucher.com / www.수출바우처.com

사업기간 : 2021. 2. 1. ~ 2022. 1. 31. (12개월)

신청기간 : 2020. 12. 9(수) ~ 30(수) 18시 까지

□ **지원사항**

- 홍보·광고, 온오프라인전시회, 통번역, 해외규격인증, 디자인 개발(홈페이지 구축, 카탈로그 디자인 등) 등 **12개 분야 수출지원서비스 이용**
- **산업별 코디네이터, 해외무역관 전담인력**을 통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

□ **지원대상 및 지원요건**

- **최근 3개년('17~'19) 평균 매출 1조원 이하의 서비스 중소·중견기업**
* 지원분야는 아래 상세 지원분야 및 업종 참조

[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사업 지원 분야 및 업종]

- ① **분야** : 콘텐츠(애니메이션, 웹툰, 게임, 전자출판, 캐릭터), **에듀테크**(이러닝, 학원, 교재), **프랜차이즈**(외식업, 이미용, 키즈놀이터, 테마파크), **기타서비스**(AI, 데이터기반, 핀테크, 생활편의, 산업자동화 등)
- ② **업종** : 교육서비스업, 출판업,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, 시스템sw 개발 및 공급업, 기타 정보 및 컴퓨터 운영관련 서비스업, 정보서비스업,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, 게임 sw개발 및 공급,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,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, 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,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,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등

- **지원요건** : (1) 준비, (2) 확대 2개 유형으로 구분 (오른쪽 페이지 '지원규모 및 바우처 발급액 한도' 참고)
- **유의사항** : 동일 사업에 최대 2년까지 참여 가능, 이미 2회 이상 선정(참여)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
- **우대조건** : 오른쪽 페이지 '우대조건' 참고

□ **지원규모 및 바우처 발급액 한도**

구분	(1)준비	(2)확대	
사업목적	해외진출 준비단계 지원	해외진출 확대단계 지원	
지원요건	① 매출 1조원 이하 서비스 분야·업종 중소·중견기업(공통)		
	② '19년도 내수기업(수출 전무)	② '19년 수출액 보유기업(수출액무관)	
지원규모	OO개사 내외	OO개사 내외	
바우처 발급액 (㉠+㉡)	(중소기업) 4,300만원	(중견기업) 5,500만원	
	국고보조율/금액㉠	(중소기업) 70% / 3,010만원	(중견기업) 50% / 2,750만원
	자비분담율/금액㉡	(중소기업) 30% / 1,290만원	(중견기업) 50% / 2,750만원

□ **신청 시 구비 서류**

서식명	구분	발급방법
사업계획서	필수	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
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	필수	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, 서명스캔본 첨부
기업 규모·실적 및 글로벌 역량 자료 * 사이트내 '자료실' 공지 확인	필수	'중소기업지원플랫폼'을 통해 제출 (URL : 신청페이지내 링크 참조)
중견기업확인서 / 중소기업확인서 *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	필수	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gminfomssgokr), 중견기업정보마당(mme.or.kr) 확인서 발급
회사소개서 및 제품기술카탈로그(또는 브로슈어)	필수	국문 및 영문 모두 제출
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수출실적 증명서('17~'19년)	선택	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(www.kita.net)
서비스 수출 실적 증빙('17~'19)	선택	IP,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+입금증빙 (위의 무역협회 무체물수출실적증명서 없을시)
기 타(우대 관련)	선택	아래의 우대조건(가점)별 관련 증빙 제출 * 신청일 기준 유효 증서, 발급 2년 이내 서류만 인정

*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한 원클릭시스템 / 기타 필수(선택)서류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제출

** **우대조건 및 인정서류**

- ①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발급된 '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확인서' 보유기업 (한국무역협회 발급서류)
- ② 고용 창출 우수 / 사회적 기업 (중앙부처/지방자치단체 발급 증빙서류)
- ③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기업 (한국디자인진흥원 발급 선정증 사본 또는 확인서)

□ **주요 심사기준**

구분	(1)준비	(2)확대
심사기준	해외 진출 역량, 수출바우처 이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	
심사방법	(1차 평가) 서류심사 → (2차 평가) 발표심사	
	* 2차 발표심사 대상기업은 1차 서류심사 통과 기업에 한하여 개별 통보	
	** 최종 합격자는 1, 2차 합산점수 기준으로 고득점순 선정 *** 기업 신청 상황에 따라 서비스 분야별 선정 쿼터를 둘 수 있음	

□ **문의처**

- (신청 관련) 02-3460-7617
- (사업 관련) 02-3460-7609/3251